

#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07 - 제44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
제출연월일 2007. 6. 7.  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(안 별표)

- 총 정원 : 변동 없음(856명)
- 일반직 정원 677명 ⇒ 679명(증 2명)
- 기능직 정원 134명 ⇒ 132명(감 2명)
  - 기능직 2명(8급 1명, 9급 1명) ⇒ 일반직 2명(9급 1명)

### 나. 존속기한 연장(안 부칙 <2001. 9. 15> 제2항제2호)

- 혁신전담 기구인력 :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
- 존속기한 : 2007년 6월 30일 ⇒ 2008년 6월 30일까지

## 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호

##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(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)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·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사천시 조례 제479호 『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』 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| 기관별<br>직급별 | 총 계 | 본 청 | 의 회<br>사무국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  | 면   | 동 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|-----|----|
| 총 합계       | 856 | 439 | 16         | 132  | 74  | 22 | 102 | 71 |
| 정무직 합계     | 1   | 1   |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|
| 단체장(시장)    | 1   | 1   |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|
| 일반직 합계     | 679 | 364 | 10         | 84   | 47  | 20 | 90  | 64 |
| 4급         | 6   | 3   | 1          | 2    |     |    |     |    |
| 5급         | 45  | 19  | 2          | 6    | 4   | 1  | 7   | 6  |
| 6급         | 176 | 96  | 3          | 20   | 12  | 5  | 28  | 12 |
| 7급         | 211 | 110 | 1          | 34   | 15  | 6  | 21  | 24 |
| 8급         | 163 | 94  | 3          | 20   | 12  | 4  | 15  | 15 |
| 9급         | 78  | 42  |            | 2    | 4   | 4  | 19  | 7  |
| 별정직 합계     | 15  | 1   |            | 14   |     |    |     |    |
| 6급상당       | 12  | 1   |            | 11   |     |    |     |    |
| 7급상당       | 3   |     |            | 3    |     |    |     |    |
| 지도직 합계     | 29  |     |            | 29   |     |    |     |    |
| 지도관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|
| 지도사        | 29  |     |            | 29   |     |    |     |    |
| 기능직 합계     | 132 | 73  | 6          | 5    | 27  | 2  | 12  | 7  |
| 6급         | 5   | 5   |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|     |    |
| 7급         | 14  | 11  |            | 1    | 2   |    |     |    |
| 8급         | 23  | 15  | 2          |      | 5   | 1  |     |    |
| 9급         | 50  | 24  | 4          | 4    | 12  |    | 6   |    |
| 10급        | 40  | 18  |            |      | 8   | 1  | 6   | 7  |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정원)<br/> <b>별표중</b><br/>                     총합계란중 총계 856, 본청 439<br/>                     일반직 합계란중 총계 677, 본청 362<br/>                         9급중 총계 76, 본청 40<br/>                     기능직 합계란중 총계 134, 본청 75<br/>                         8급중 총계 24, 본청 16<br/>                         9급중 총계 51, 본청 25</p> <p>부 칙 &lt;2001. 9. 15&gt;<br/>                     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2.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은 <u>2007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한다.</p> | <p>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정원)<br/> <b>별표중</b><br/>                     총합계란중 총계 856, 본청 439<br/>                     일반직 합계란중 총계 679, 본청 364<br/>                         9급중 총계 78, 본청 42<br/>                     기능직 합계란중 총계 132, 본청 73<br/>                         8급중 총계 23, 본청 15<br/>                         9급중 총계 50, 본청 24</p> <p>부 칙 &lt;2001. 9. 15&gt;<br/>                     ②(한시정원)-----<br/>                     -----</p> <p>2.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은 <u>2008년 6월 30일까지</u>로 한다.</p> |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【지방자치법】

第103條 (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)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,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】

제19조(한시정원) ① ~ ⑤ 생략

⑥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~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(한시정원)존속기한연장】

-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전략팀-152(2007. 2. 22)호, 지방조직발전팀 -210(2007. 2. 26)호 및 경남도 행정과-4012(2007. 3. 21)호와 관련임.
- 존속기한연장
  - 당초 : 2007. 6. 30 → 변경 : 2008. 6. 30까지